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7

발의연월일: 2020. 7. 16.

발 의 자:태영호・박성중・金炳旭

이태규 · 윤한홍 · 김예지

조경태・이명수・이 용

권명호 · 송언석 · 이용호

윤주경·권영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 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,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 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됨.

그러나 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 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3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89조의3(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) ① 사회복무요원, 예술· 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 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② 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1.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, 제4호, 제33조의10제 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
 - 2. 제33조제2항제5호,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,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89조의3(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) 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.

- 1.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, 제3호의2, 제4호, 제33 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 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
- 2. 제33조제2항제5호, 제33조의 10제2항제5호 및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,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

제89조의3(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) ① 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- ② 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1.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, 제3호의2, 제4호, 제33 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 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

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

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2. 제33조제2항제5호, 제33조의 10제2항제5호 및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 근하거나, 허가 없이 무단으 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